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. 7. 3 선고 2024가단507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6. 12.

판 결 선 고 2024. 7. 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9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4. 6. 11.부터 2024. 5. 31.까지는 연 10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원고의 피고에 대한, 대구지방법검찰청 소속 공증인 C 2014. 6. 9. 작성 2014년

증서 제35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보증금채권 90,000,000원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 권기백